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의 분장사무에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면서 공공노사정책관을 폐지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사관행개선과 및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모성보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50명(6급 1명, 7급 12명, 8급 21명, 9급 16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53명(6급 7명, 7급 8명, 8급 15명, 9급 23명) 중 22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10명)은 감축하고,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5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5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

책실에 노동개혁총괄과를 신설하면서 공무원노사관계과 및 공공기관노사관계과를 공공노사관계과로 개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의 명칭을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변경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30. ~ 4.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8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북한 관련 고용노동정책의 총괄

제7조제2항 중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으로 하며,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을 “노동개혁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및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하며, 노동개혁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및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4호, 제28호, 제31호,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3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3호 및 제2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의3까지 및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

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6항 중 “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지원과·근로기준정책과·근로감독기획과·퇴직연금복지과·고용차별개선과·공무원노사관계과 및 공공기관노사관계과”를 “노동개혁총괄과·공공노사관계과·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지원과·근로기준정책과·근로감독기획과·퇴직연금복지과 및 고용차별개선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사협력정책과장”을 “노동개혁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노사정책의”를 “노사 및 노동개혁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동개혁 관련 제도개선 총괄·조정
3. 노사 및 노동개혁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조정
4.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 및 노사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노동개혁 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상생임금위원회 운영 및 상생임금 확산 지원
7.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 수립 및 총괄
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조사 및 분석
9.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협의 조정
10.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11. 업종별 상생 협약체결 및 확산 방안 마련
12. 업종별 상생협약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13. 원하청 상생협의체 운영·지원

제7조제8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사관계법제과장”을 “공공노사관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노동조합”을 “공공부문 노사관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관계부처 협의·조정

3.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개선

4.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지도

5.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점검·시정

6. 공무원·교원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7.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

⑩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협력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노사협력 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조정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직·운영 총괄

4. 사업장·지역·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터 혁신 및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6.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지원
7.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8. 노사협력 정책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공공부문도 포함한다)
9. 노사관계 연구단체·노동단체·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10.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
11.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12.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13.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및 노사관계 자율개선 지원·지도
14. 노사관계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공공부문도 포함한다)
1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 ⑪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관리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

도 및 지원

7.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 지원·지도
8.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도
9.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컨설팅
10.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11.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행 점검
12.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3.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4. 노사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점검·시정
1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노사관계 법·제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2항(종전의 제10항)제2호 중 “지원”을 “지원(공공부문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분석”을 “분석(공공부문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8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을 “고용차별개선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차별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

괄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3.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4.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7.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8.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제1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중대재해 관리과장”을 각각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을 각각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한시정원”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9장에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노사관행개선과) ① 노사관행개선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제27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제28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2023년 4월 12일”을 각각 “2025년 4월 12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란 중 “남구”를 “미추홀구”로 한다.

별표 4 제1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과명란 중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하고, 같은 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과명란 중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하며, 같은 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과명란 중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하고, 같은 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과명란 중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하며, 같은 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과명란 중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하고, 같은 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과명란 중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경기지청의 과명란 중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6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중 총계 “6,696”을 “6,7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96”을 “6,746”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64”를 “165”로, 행정주

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28”을 “440”으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61”을 “682”로, 행정서기보 “111”을 “112”로,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54”를 “87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53”을 “52”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6,686”을 “6,7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86”을 “6,736”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64”를 “165”로,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28”을 “440”으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61”을 “682”로, 행정서기보 “203”을 “204”로,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54”를 “87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30”을 “29”로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2023년 4월 12일”을 “2025년 4월 12일”로 한다.

8. 제28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4월 12일)

총계	31
일반직 계	31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4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5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9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9]

고용노동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7조 및 제27조의2
관련)

1. 노사관행개선과(존속기한: 2025년 4월 10일)

총계	6
일반직 계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2. 임금근로시간정책과(존속기한: 2025년 4월 10일)

총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주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⑦ (생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⑧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북한 관련 고용노동정책의 총괄</u>	<u><삭제></u>
9. ~ 17. (생략)	9. ~ 17. (현행과 같음)
⑨ · ⑩ (생략)	⑨ · ⑩ (현행과 같음)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⑪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북한 관련 고용노동정책의 총괄</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⑫ ~ ⑮ (생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7조(노동정책실) ① (생략)	제7조(노동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동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u>	② ----- ----- ----- -- <u>노동개혁정책관, 노사협력정</u>

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으로 하
며,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
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
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노
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1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
을 보좌한다.

④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용노
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1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
지 및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공공노사정책관은 「고용노
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1조제3항제28호부터 제30호까
지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
장을 보좌한다.

⑥ 노동정책실에 노사협력정책
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

책관 및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하
며, 노동개혁정책관, 노사협력
정책관 및 근로기준정책관----

-----.

③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노
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1조제3항제1호, 제4호, 제28호,
제31호, 제42조제3항 및 제42조
의2제3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
장을 보좌한다.

④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노
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1조제3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3호 및 제29호부
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용노
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1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의3
까지 및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
을 보좌한다.

⑥ ----- 노동개혁총괄
과·공공노사관계과·노사협력

지원과 ·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감독기획과 · 퇴직연금복지과 · 고용차별개선과 · 공무원노사관계과 및 공공기관노사관계과를 둔다.

⑦ (생략)

⑧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조정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4. 노사협력 관련 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5. 사업장 · 지역 · 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터 혁신 및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 · 지원
8.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

정책과 · 노사관계법제과 · 노사관계지원과 ·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감독기획과 · 퇴직연금복지과 및 고용차별개선과-----
---.

⑦ (현행과 같음)

⑧ 노동개혁총괄과장-----
-----.

1. 노사 및 노동개혁 정책 -----

2. 노동개혁 관련 제도개선 총괄 · 조정
3. 노사 및 노동개혁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 · 조정
4.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 및 노사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노동개혁 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상생임금위원회 운영 및 상생임금 확산 지원
7.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 수립 및 총괄
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조사

<u>사에 관한 사항</u>	<u>및 분석</u>
<u>9. 임금수준 · 임금구조 · 임금격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u>	<u>9.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협의 조정</u>
<u>10.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u>	<u>10.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 · 제도 개선</u>
<u>11.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지도 방향의 수립 · 시행</u>	<u>11. 업종별 상생 협약체결 및 확산 방안 마련</u>
<u>12. 노사정책 관련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u>	<u>12. 업종별 상생협약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u>
<u>13. 노사관계 연구단체 · 노동단체 ·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u>	<u>13. 원하청 상생협의체 운영 · 지원</u>
<u>14. 노사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 분석 · 관리</u>	<u><삭 제></u>
<u>15.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u>	<u><삭 제></u>
<u>16.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u>	<u><삭 제></u>
<u>17.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도 · 감독</u>	<u><삭 제></u>
<u>17의2.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지도 · 감독</u>	<u><삭 제></u>
<u>18. (생 략)</u>	<u>14. (현행 제18호와 같음)</u>
<u>⑨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⑨ 공공노사관계과장-----</u> <u>-----.</u>
<u>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u>	<u>1. 공공부문 노사관계 -----</u> <u>-----</u>

<u>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u> <u>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u> <u>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관리</u> <u>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u> <u>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u> <u>7.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u> <u>8.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u> <u>9.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컨설팅</u> <u>10.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u> <u>11.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행 점검</u>	<u>2.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관계부처 협의·조정</u> <u>3.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개선</u> <u>4.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지도</u> <u>5.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점검·시정</u> <u>6. 공무원·교원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u> <u>7.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	---

12.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3.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신 설>

<삭 제>

<삭 제>

⑩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노사협력 정책의 수립 및 총
괄

2. 노사협력 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조정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직 ·
운영 총괄

4. 사업장 · 지역 · 업종 단위 노
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터 혁신 및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6.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 ·
지원

7.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
사에 관한 사항

8. 노사협력 정책 관련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공공부문도
포함한다)

9. 노사관계 연구단체 · 노동단

<신 설>

체·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10.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

11.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도
· 감독

12.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13.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및 노사관
계 자율개선 지원·지도

14. 노사관계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공공부문도 포함한다)

1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노사협력에 관한 사
항

⑪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
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
한 실태파악 및 관리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7.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 지원·지도

8.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도

9.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컨설팅

10.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11.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행 점검

12.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3.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4. 노사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점검·시정

1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노사관계 법·제도에 관한 사항

⑩ 노사관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3.·4. (생략)

5.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6.·7. (생략)

⑪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2의2.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의3.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2의4.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의5.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2의6. 근로시간 단축 등 관계 중

⑫ -----
-----.

1. (현행과 같음)

2. -----
-----]지원(공공부문도 포함한다)

3.·4. (현행과 같음)

5. ----- 분석
(공공부문도 포함한다)

6.·7. (현행과 같음)

⑬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양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2의7.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정
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2의8. 근로시간·휴일 및 휴게
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
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삭 제>

3. ~ 18. (생 략)

3. ~ 18. (현행과 같음)

⑫·⑬ (생 략)

⑭·⑮ (현행 제12항 및 제13항
과 같음)

⑭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차별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
의 연구 및 실태조사

3.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
한 실태조사

4.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
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

책수립 및 운영

7.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8.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⑮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개선

3.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교육 및 홍보

4. 공무원·교원의 단체교섭 지원·지도

5.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지도

6.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분쟁 조정의 지원

<삭 제>

7.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외협력 업무

8.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운영
지도

9.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10.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점검·
시정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
선 대책의 수립·운영

12.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에 관한 사항

<16>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정
책수립 및 제도개선

2.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교
육·홍보

3.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평가지
표 개발

4.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유
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

<-- 고용차별개선과장-----
-----.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차별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
의 연구 및 실태조사

3.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
한 실태조사

4.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
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외협력 업무

5.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및 노사관계 자율개선 지원·지도
6.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7. 공공기관 노동조합 설립·운영 지도
8.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

<신 설>

<신 설>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

조정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7.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8.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3과장,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광역근로감독과장,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취업지원총괄과장, 실업급여과장, 국민취업지원과장, 국민취업지원1과장, 국민취업지원2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산재예방지도팀장은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③ ~ ⑫ (생략)

⑬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 7. (생략)

⑭ ~ ⑮ (생략)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고용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팀장은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과장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③ ~ ⑥ (생략)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③ ~ ⑥ (현행과 같음)

⑧ 산재예방지도과장과 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 관할 구역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의정부·경기·성남·울산·포항·전주·천안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강원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강원·강릉·원주·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제14조제13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8) _____

_____.

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

1. 삭제

2. ~ 5. (생략)

제9장 한시정원

<신설>

<신설>

제28조(한시정원) ①·② 삭제
③ ~ ⑥ (생략)
⑦ 삭제
⑧ 모성보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2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

2. ~ 5. (현행과 같음)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7조(노사관행개선과) ① 노사관행개선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제27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제28조(한시정원)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u>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u> ⑨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3년 4월 12일까지</u>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3년 4월 12일까지</u>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⑪ (생략)	⑨ ----- ----- ----- ----- <u>2025년 4월 12일</u> ----- ----- -----. ⑩ ----- ----- ----- ----- <u>2025년 4월 12일</u> ----- ----- -----. ⑪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96</u>	<u>6,746</u>	+50
일반직 계	<u>6,696</u>	<u>6,746</u>	+50
·	·	·	
·	·	·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64</u>	<u>165</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u>428</u>	<u>440</u>	+12
·	·	·	
·	·	·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61</u>	<u>682</u>	+21
·	·	·	
·	·	·	
행정서기보	<u>111</u>	<u>112</u>	+1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u>854</u>	<u>870</u>	+16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53</u>	<u>52</u>	-1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86</u>	<u>6,736</u>	+50
일반직 계	<u>6,686</u>	<u>6,736</u>	+50
·	·	·	
·	·	·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64</u>	<u>165</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u>428</u>	<u>440</u>	+12
·	·	·	
·	·	·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61</u>	<u>682</u>	+21
·	·	·	
·	·	·	
행정서기보	<u>203</u>	<u>204</u>	+1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u>854</u>	<u>870</u>	+16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0</u>	<u>29</u>	-1
·	·	·	